

##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3.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3. 11

다. 상정일자 :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확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민원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수입증지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편의의 민원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증명발급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을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